#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8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 박성훈·이상휘·이헌승

안상훈 • 박충권 • 백종헌

조지연 · 정연욱 · 김대식

서지영 · 이인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 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휴직·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 휴가 부여를 암묵적·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휴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여전히 자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채용·승진·퇴직 등 근로 전반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보임.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호)의 의결을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2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	<u>배우자 출산휴</u>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	<u>가 기간</u>
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	
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	
우에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